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25570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일

피고, 피항소인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9. 28.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19가단513839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돈은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로써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한 것으로 선택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0행과 4쪽 18행의 “L”을 “M”으로, 4쪽 3행의 “피고”를 “원고”로, 4쪽 4행의 “원고”를 “피고”로, 4쪽 5행의 “피고”를 “원고”로, 5쪽 10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는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납입계좌를 각 지정하고, 그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38,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위 38,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계약서 제4조 2)항에서 조합원분담금은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예금주 F(주)] 계좌로, 업무대행비는 우리은행 (계좌번호 2 생략)[예금주 F(주)] 계좌로 각각 납입하여야 하고, 그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각 계좌가 아닌 농협 (계좌번호 3 생략)[예금주 피고] 계좌로 조합원분담금 5,000,000원, 업무대행비 33,000,000원 등 합계

38,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계약서 제4조 2)항은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납부에 관한 획일적이고 명확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 지정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될 경우 피고가 이를 조합원분담금 또는 업무대행비의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이는 피고를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최초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원고가 입금한 38,000,000원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로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인정해 온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입금확인증(갑 제2호증)에도 당초 이 사건 조합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와 함께 원고가 입금한 계좌가 추가 기재되어 있는바, 최초 조합원분담금 등의 입금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역시 최초 소 제기 당시부터 위 38,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로 납부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38,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로 납부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김수경, 판사 김우현